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8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 박상웅・박준태・최형두

박덕흠 · 신성범 · 이만희

윤재옥 · 신동욱 · 김 건

이상휘 • 유영하 • 이인선

한기호 · 이종욱 · 김태호

성일종 • 서천호 • 김민전

권성동 · 정연욱 · 최은석

이달희 • 유용원 • 김원이

의원(24인)

제안이유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혁신 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의 형 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소멸이 가속화되 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도시가 아닌 인 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규모·이전비용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립기준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제안을 받거나 직접 공 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국토교통부장 관은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및 실 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 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제7조·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이전공공기관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라. 수도권에 있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매각대금 등을 재

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공공기관이전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공공기관이전도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등에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 마.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에 있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9조).
- 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옥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지원 및 융자, 소속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국·공유지의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소속 이주직원에 대하여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의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며, 이주직원에 대하여 주택 및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를 할 수있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법률 제 호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 전하는 공공기관(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3. "공공기관이전도시"라 함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업·상업·주거 ·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 4.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 5.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이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 7.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 8.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3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 10.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 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하는 지역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 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공공기관이전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등

- 제6조(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②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기관이전도 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 1. 생활 및 교통 인프라
 - 2.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
 - 3.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
 - 4.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 전략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

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명칭 · 목적 및 시행자
 - 2.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 ④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제8조(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전도 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

- 예정지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공공기관이 전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
-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 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의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기관이전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발계획의 명칭,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3.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4.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6.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 7.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공공기 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 6.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의견을 듣고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실시계획

- 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 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 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 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 사·측량 또는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 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 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 제14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허

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 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2.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의 인가
- 3.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 목적 변경의 승인
- 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

- 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10.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 14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1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 의 허가
-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 15.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16.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 1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 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 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 19.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2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 2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2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 록
-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 2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2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 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외한다) 등을 면제한다.
- 제15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이전도시 개 발예정지구 안에서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전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 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 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 1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 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 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 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 실시 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 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溝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 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

리청으로 본다.

- 제23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공공기관이전 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 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 ②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 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제24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

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 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5조(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 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 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26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사항
 - 3. 공공기관이전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 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 제27조(지역인재채용협의체)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에 협의체(이하 "지역인재채용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 자문한다.
 -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장 공공기관이전도시건설특별회계

제29조(공공기관이전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공공 기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이전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전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 · 운용한다.
- ③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30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4.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 5.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
 - 6. 그 밖의 수입금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
 - 2. 공공기관이전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 공공기관이전도시건설 비용
 -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5.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 6. 공공기관이전도시의 건설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 7.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8. 제42조에 따른 종합병원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 9. 제43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 10. 공공기관이전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
- 11.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
- 12.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이전도시의 조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 제31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 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32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33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34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5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36조(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종전부동산을 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회계가 조성·취득한 청사 및 부지 등은 「국유재산법」 제17조 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기관이 관리· 운용하는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제5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 제37조(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개축 등의 제한) 이전공공기관은 일상적인 유지·보수 외에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임차면적을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은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임차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8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에 대

- 하여 소유 현황, 규모, 특성, 주변 여건 및 매각 또는 활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하며,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9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 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 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 ②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 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0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① 국가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직접 매입하 는 경우에는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 ②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39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제39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은 매입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④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에 전입하거나 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6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제41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할 수 있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 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 제42조(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전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종합 병원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3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44조(고용보조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전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제45조(지역기업의 우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그 밖에 공공기관이전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③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48조(전·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9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 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이전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이전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협력금・교통유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기관이전도시 개 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공공기관이전도시등"이라 한다)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

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 2.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공공기관이전도시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 복하여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지정을 하여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와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 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구역에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개발계획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1. 종전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이 종전사업구역에서의 사업시 행에 비하여 혂저히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시행자가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 종전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 · 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⑥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 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2조(서류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 제53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 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 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대로 공공 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경우
 - 라.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 마.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 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사.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 아.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인 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 3.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제38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9장 벌칙

- 제58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